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

2020. 2.

고 용 노 동 부

목 차

Ⅰ.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····· 1

[붙임]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···· 2

Ⅱ.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FAQ ····· 4

Ⅲ. [별첨] 고용유지지원금 상세 신청 안내서 ····· 7

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

□ 사업개요

○ 매출액·생산량 감소 등 **고용조정이 불가피**하게 된 사업주가 **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를 실시**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**인건비 일부를 지원**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

□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

←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(기준달)의

1.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% 이상 증가한 사업주
2.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,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,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%이상 감소
3.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,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%이상 감소
4.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
5.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·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
6.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,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
7.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%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%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
8. 당해 업종·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

□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

사업명	지원조건	지원수준
휴업	근로시간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/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,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	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/3(대규모기업 1/2~2/3) 지원 * 1일 6.6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)
휴직	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	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/3(대규모기업 1/2~2/3) 을 지원 * 1일 6.6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)

* 시행규칙 제25조(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) ①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전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(이하 이조에서 '기준기간'이라고 한다)동안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.

□ 지원(신청)절차

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	→	고용유지조치 실시	→	지원금 신청 (매월)	→	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
사업주 → 고용센터		사업주		사업주 → 고용센터		고용센터

☞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요건 완화 적용

붙 임 **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**

► **(사업개요)**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*가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

* 재고량 50% 증가, 생산량·매출액 15%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

► **(특별 지원) 매출액 15%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'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'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**

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: 당해업종,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

□ 지원대상

○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* 중 「고용보험법시행규칙」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

*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, 숙박업, 보건업(병·의원 등) 등

- 또한,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

□ 추진기간 : '20.1.29. ~「국가 감염병 위기경보」 해제 시까지

□ 지원조건

○ 전체 근로시간의 20%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

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: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

□ 구체적 지원내용

○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/3~1/2(1일 상한액 6.6만원, 연 180일 이내)

*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▲우선지원대상기업 2/3, ▲그 외 1/2

참 고 **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**

	고용유지지원금	⇨	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
계획 신고	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: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* 본사,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"사업"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	⇨	현행과 같음
지원 대상	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(생산량·매출액 15% 감소요건 등)	⇨	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(부분)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*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: 당해 업종,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
지원 수준	사업주가 휴업,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/3(대규모기업 1/2) 지원 * 단,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% 이상인 경우 2/3 지원	⇨	현행과 같음
지원 한도	1일 6.6만원(연간 최대 180일)	⇨	현행과 같음
지원 요건	(휴업) 휴업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*의 월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20% 이상 단축해야 가능 * 기준기간: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 이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**<예시>** * 기준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달(3월)의 피보험자수(50명)와 기준기간(9~12월)의 피보험자수와 동일해야 함.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'19년 9월 80명, 10월 70명, 11월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*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(휴일근로)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,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(휴일근로)만 포함됨, 일시적,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(휴일근로)는 포함 안됨 (휴직) 1개월 이상 휴직 실시	⇨	현행과 같음

Ⅱ.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FAQ

<1>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□ 먼저, 경영 악화 등으로 **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를 실시**하기 **하루 전까지 "고용유지조치계획서"**를 **제출**하셔야 합니다.

○ 신청 절차는 **"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"에서 가능**하며,

↳ ①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→ ②상단의 "기업서비스" → ③"고용안정장려금" → ④"고용유지지원금"에서 신청 가능

○ 궁금한 사항은 **(국번없이) 1350**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과(팀)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(http://workplus.go.kr에 연락처 안내)

□ **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**하고 **휴업·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**에 **지원금 신청**이 가능합니다.

<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>

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	→	고용유지조치 실시	→	지원금 신청 (매월)	→	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
사업주 → 고용센터		사업주		사업주 → 고용센터		고용센터

<2>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?

□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, **실제 지급한 인건비**(휴업 또는 휴직수당)의 **1/2 ~ 2/3***을 **지원**해 드립니다.

* 지원비율: ▲우선지원대상기업: 인건비의 2/3 ▲대규모기업: 인건비의 2/1 또는 2/3

<3>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?

□ **아닙니다.**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**전체 근로시간의 20% 이상***을 **초과**하여 **휴업을 실시**하거나 **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**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
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: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(기준달)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

<4>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?

□ 해당 사업장의 **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**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○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.

<5> "고용유지조치계획서"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?

□ 휴업·휴직을 실시하기 **하루 전까지 제출**해야 합니다. "고용유지조치계획서"를 제출하시고 **실제로 휴업·휴직을 실시**한 경우, **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**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○ **휴업**은 **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**(예시: 1.1~1.31.)로 제출해야 하며, 휴직은 1개월 단위*로 제출해야 합니다.

* (예시) 1.19~2.18.(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)

<6>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, 계획대로 휴업·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□ **변경된 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**를 실시하기 **하루 전까지 "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"**를 **제출**하셔야 합니다.

○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"고용유지조치계획서"와 동일합니다.

<7> 총 근로시간을 정하는 6개월 전과 현재 피보험자 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?

□ 6개월 전에 비해 현재 피보험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**현재 피보험자 수를 기준**으로 **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**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.

↳ (예시)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, 피보험자 수가 10명이었으나, 현재 피보험자 수가 12명으로 증가한 경우

→ 기준근로시간 = 현재 피보험자 수(12명) × 40시간 = 480시간

<8> 총 근로시간에 연장·휴일근로 시간 등도 포함되나요?

□ 근로시간은 **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** 등에 다른 '**소정근로**', '**연장근로**', '**휴일근로**'이거나,

○ **상당 기간 계속적·반복적**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'연장근로', '휴일근로'를 의미합니다.

* 일시적·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해당되지 않음

<9> 지사(또는 공장별)로 신청할 수 있나요??

□ **원칙적**으로는 **본사가 신청**해야 합니다. 다만, **각 사업장별**로 **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, ②인사·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**되어,

○ 각각 **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**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
<10>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?

□ 고용촉진장려금, 고용창출장려금,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,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<11>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?

□ **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·휴직을 하지 않거나**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, **지급 제한·추가 징수(최대 5배) 등 불이익**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[별첨] 고용유지지원금 상세 신청 안내서

-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서 -

2020. 2.

고 용 노 동 부

순 서

1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1

2.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? 2

3.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? 3

4.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? 4

5. 지원 상세 요건은 무엇인가요? 5

6.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? 7

7. 고용유지지원금 제출 필요 서류 7

<붙임 1> 고용유지(휴업)조치 계획신고서 8

<붙임 2> 고용유지(휴직)조치 계획신고서 11

<붙임 3> 고용유지(휴업)조치 지원금신청서 14

<붙임 4> 고용유지(휴직)조치 지원금신청서 16

<붙임 5>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18

1. 고용유지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1.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가요?

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2.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계획인가요?

고용유지지원금은 **근로시간을 20%이상 줄이거나**, 근로자 1인 이상에게 **1개월 이상의 휴직**계획을 **사전신청한 사업장**에 지급됩니다.

3.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나요?

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**여행사 및 기타 여행업, 이벤트·공연업, 학원업, 숙박업, 보건업(병원 등)**의 업종은 예약취소증, 휴업권고서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
제조업의 경우 원자재수급차질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
※기타 업종의 경우에도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3-1.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이 어려운 경우, 매출감소가 있으신가요?

기준달의 **매출액**이 (1)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(2)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또는 (3)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매출액 대비 **15%이상 감소**한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기준달이란?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
(2월 25일부터 계획을 실시할 경우 기준달은 1월)

4. 휴업, 휴직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%이상을 지급하셨나요?

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후 이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고, 휴업, 휴직근로자들에게 **70%이상의 휴업수당과, 휴직수당을 지급하셔야 고용유지지원금신청**[붙임3,4]이 가능합니다.

2. 고용유지지원금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?

1. 인터넷신청을 원하시나요?

고용보험홈페이지(www.ei.go.kr)을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.

↳ ①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→ ②상단의 "기업서비스" → ③"고용 안정 장려금" → ④"고용유지지원금"에서 신청 가능

2. 방문신청을 원하시나요?

사업체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(팀)을 방문하여 서류작성 및 신청해주세요.

<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[붙임 5]>

3.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?

1.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하셨나요?

휴업, 휴직여부에 따라 고용유지(휴업,휴직)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.[붙임1~2]

2. 근로자와 휴업, 휴직에 대한 협의를 하셨나요?

근로자와 휴업, 휴직기간 및 휴업, 휴직 수당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그 증명서류(별도 양식없음)를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시 함께 제출해주세요.

3.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신가요?

근로시간 조정 등 휴업을 할 경우 **취업규칙, 단체협약** 등 기존의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세요.

4.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셨나요?

예약취소증, 휴업권고서, 원자재수급관련 서류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주세요.

4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?

1.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신가요?

산업분류	분류기호	상시근로자 수
1.제조업	C	500명 이하
2.광업	B	300명 이하
3.건설업	F	
4.운수업	H	
5.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J	
6.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N	
7.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8.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9.도매 및 소매업	G	200명 이하
10.숙박 및 음식점업	I	
11.금융 및 보험업	K	
12.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R	
13.그 밖의 업종		100명 이하

※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「통계법」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

위의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.

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사업주가 **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, 휴직수당의 2/3이 지원**되며 **1일한도는 6.6만원**입니다.

2. 대규모 기업이신가요?

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대규모기업입니다.
대규모기업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**휴업, 휴직수당의 1/2이 지원**되며 1일 한도는 6.6만원입니다. 다만 근로시간 단축률이 50%이상일 경우 **2/3까지 지원**됩니다.

5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?

1 공통 요건

*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해서는 ①**공통요건(8가지 요건 중 1가지)** 및 각 ② **지원금 지원요건**을 **동시에 충족**해야 합니다.

요건	제출서류 (예시)
①기준달 말일 **재고량**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**50%이상 증가**한 경우	재고량대조표
②기준달의 **생산량**이 (1)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(2)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생산량 또는 (3)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생산량 대비 **15%이상 감소**한 경우	생산량대조표
③기준달의 **매출액**이 (1)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(2)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또는 (3)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매출액 대비 **15%이상 감소**한 경우	매출액대조표
④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	재고량대조표 또는 매출액대조표
⑤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,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	조직구성변경 확인서
⑥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,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	생산방식변경확인서
⑦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%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%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	관할 고용센터로 문의
⑧당해 업종,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	※코로나19 관련 :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

* ⑤~⑧을 적용할 경우 관련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유무판단

2 고용유지(휴업)지원금 지원 요건

1. 고용유지조치(휴업)계획수립[붙임1]
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

2. 수립된 계획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6개월전~4개월전(3개월간)* **평균근로시간보다 20%를 초과하여 감소**

 *(예시) '20.3월에 휴업 또는 휴직을 하는 경우 '19.9~11월

3. 고용유지 기간동안 휴업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/10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

3 고용유지(휴직)지원금 지원 요건

1. 고용유지조치(휴직)계획신고서[붙임2]
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(붙임)

2. 수립된 계획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**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**을 실시

6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?

* 아래 예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1.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, 사업주 권유, 희망,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
2.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
3.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, 매출액,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
4.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
5.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

7. 고용유지지원금 제출 서류[요약]

1 고용유지(휴업)지원금

1. 고용유지(휴업)조치계획서[붙임1]
2. 취업규칙, 단체협약등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(매출액 감소·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)

+ <실제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> 고용유지(휴업)조치 지원금신청서(휴업수당지급후 매달) [붙임3]

2 고용유지(휴직)지원금

1. 고용유지(휴직)조치계획서[붙임2]
2. **코로나19**로 인한 피해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(매출액 감소·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)

+ <실제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> 고용유지(휴직)조치 지원금신청서(휴직수당지급후 매달)[붙임3]

붙임1 **고용유지(휴업)조치 계획신고서**

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[별지 제36호서식] <개정 2013.12.30>

년 제 차(월분) 고용유지조치 ☐ 근로시간 조정 ☐ 교대제 개편 ☐ 휴업 등 ☐ 계획 ☐ 계획변경 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: 1일
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	명 칭	
	피보험자수 명	대규모기업	[] 해당 [] 비해당
	소 재 지 (전화번호: 휴대전화: 담당자:)		

기준기간 총근로시간	구 분	3개월 평균 (㉠+㉡+㉢)/3	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 직전 1월~3월	직전 4월 ㉠	직전 5월 ㉡	직전 6월 ㉢
	총근로시간 (소정+초과)	①	* 작성생략			
	소정 근로시간					
	초과 근로시간					

*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「기준기간 총근로시간」 내역		별 지 기 재	
고용유지 조치 내용	② 총 고용유지조치기간 (소정근로일수)	. . ~ . . (일)	③ (월) 전체 피보험자수 명
	④ (월)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수	시간	⑤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 시간
	⑥ (월) 단축된 근로시간	시간	⑦근로시간 단축률 %
	⑧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보전 지급기준		

*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및 고용유지조치 사유	별 지 기 재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
	1. 취업규칙(또는 단체협약)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매출액 장부, 생산 · 재고대장, 손익계산서, 세금계산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명단, 노사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	없음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년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

연번	성 명 생년월일	고용유지조치 예정(변경)일자																계
1		일자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(일) (시간)
		시간																
		일자	16	17	18	19	20	21	22	23	24	25	26	27	28	29	30	31
		시간																
2		일자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
		시간																
		일자	16	17	18	19	20	21	22	23	24	25	26	27	28	29	30	31
		시간																
3		일자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
		시간																
		일자	16	17	18	19	20	21	22	23	24	25	26	27	28	29	30	31
		시간																
계																	명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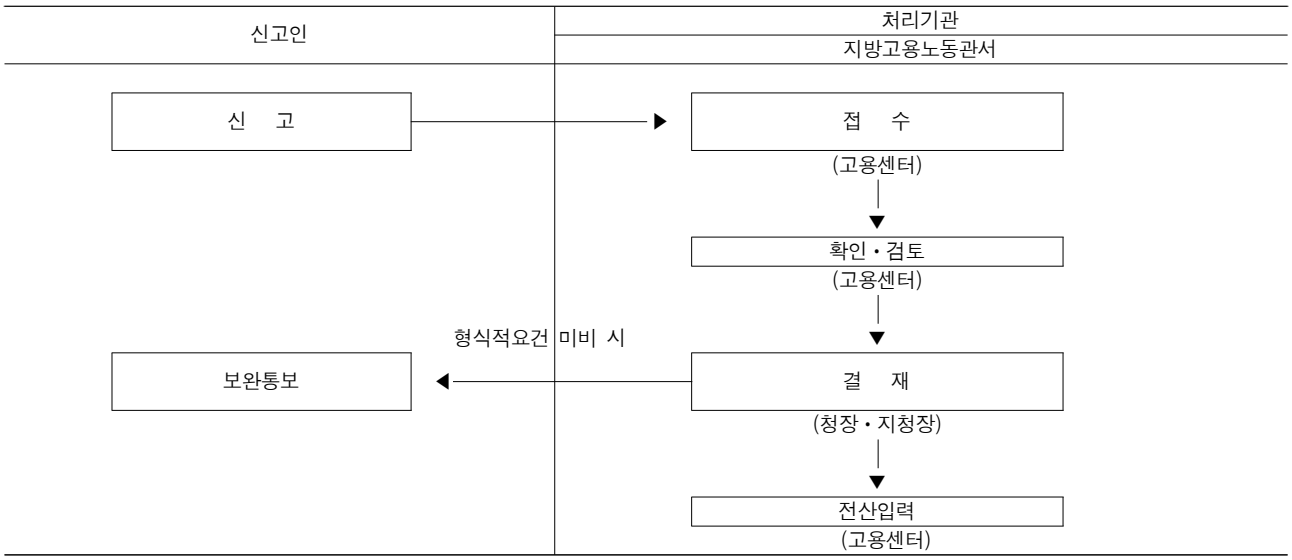
공지사항

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1. ①란은 고용유지조치시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각각의 월의 ③란에 기재된 전체 피보험자수의 소정근로시간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)과 초과근로시간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.
2. ②란은 계획하고 있는 총 고용유지조치(근로시간 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) 기간 및 소정근로일수을 적습니다
3. ③란은 (월)의 전체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. 이 경우 일용근로자,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보험자는 제외합니다.
4. ④란은 (월)의 고용유지조치(근로시간 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) 대상 피보험자를 적습니다.
5. ⑤란은 "③의 전체 피보험자수 × 조업일수 × 1일 근로시간"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.(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"0")
6. ⑥란은 ① - ⑤ 근로시간 산정내용을 적습니다.
7. ⑦란은 ⑥/①×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.
8. ⑧란은 ⑥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

붙임2 **고용유지(휴직)조치 계획신고서**

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[별지 제38호서식] <개정 2011.1.3>

년 제 차(월분) 고용유지조치(휴직) □ 계 획 □ 계획변경 신고서

(앞 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기간 : 1일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	명 칭	
	피보험자수	대규모기업	[] 해당 [] 비해당
	소재지 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 담당자:)		
고용유지조치(휴직) 내용	고용유지조치(휴직) 기간의 휴직수당지급기준		
	고용유지조치(휴직) 기간		
	고용유지조치(휴직) 대상자수	명	
기타	고용유지조치(휴직) 사유	(별지 기재 가능)	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
	1. 매출액장부, 생산·재고대장, 손익계산서, 세금계산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. 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명단, 노사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	없음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공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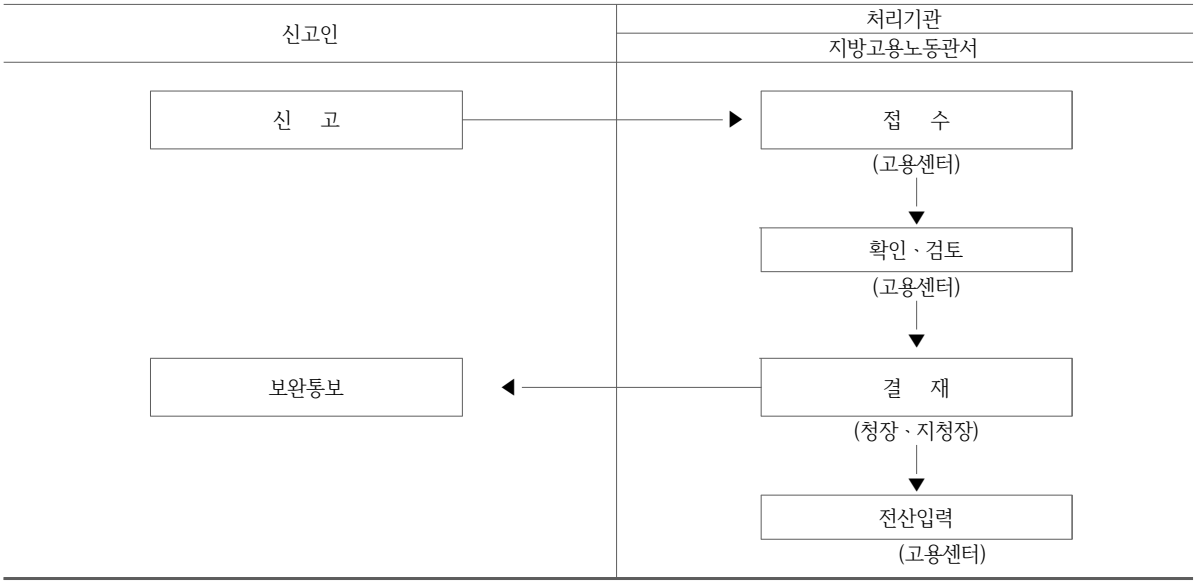
1.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2. 고용유지조치계획은 1개월 단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
고용유지조치(휴직) 대상자 명단

※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,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.

연번	성명	주민등록번호	휴직예정(변경)기간	비고
계			명	

처리절차



붙임 3 **고용유지(휴업)조치 지원금 신청서**

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[별지 제32호서식] <개정 2013.12.30>

년 제 차(월분) 고용유지조치

☐ 근로시간 조정
☐ 교대제 개편 지원금 신청서
☐ 휴업 등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: 10일
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	
	명 칭	대규모기업 1. 해당 2. 비해당
	소재지 (전화번호: 휴대전화: 담당자:)	
고용유지조치 현황	① (월) 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	② (월)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명
	③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시간	④ (월)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 시간
	⑤ (월) 단축된 근로시간 시간	⑥ 근로시간 단축률 %
신청내용	⑦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총액 원	⑧ 지원율 2/3, 1/2
	⑨ 지원금 신청액 [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총액×지원율] (원)	
	계좌번호 은행 (예금주:)	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1.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. 출퇴근카드,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(뒤쪽)

년 월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금 신청 명세

연번	성 명 생년월일	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	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	지원금신청액	비고
<예시>	홍길동 80. 02. 16	100시간	400,000원	266,666원	
2					
3					
4					
계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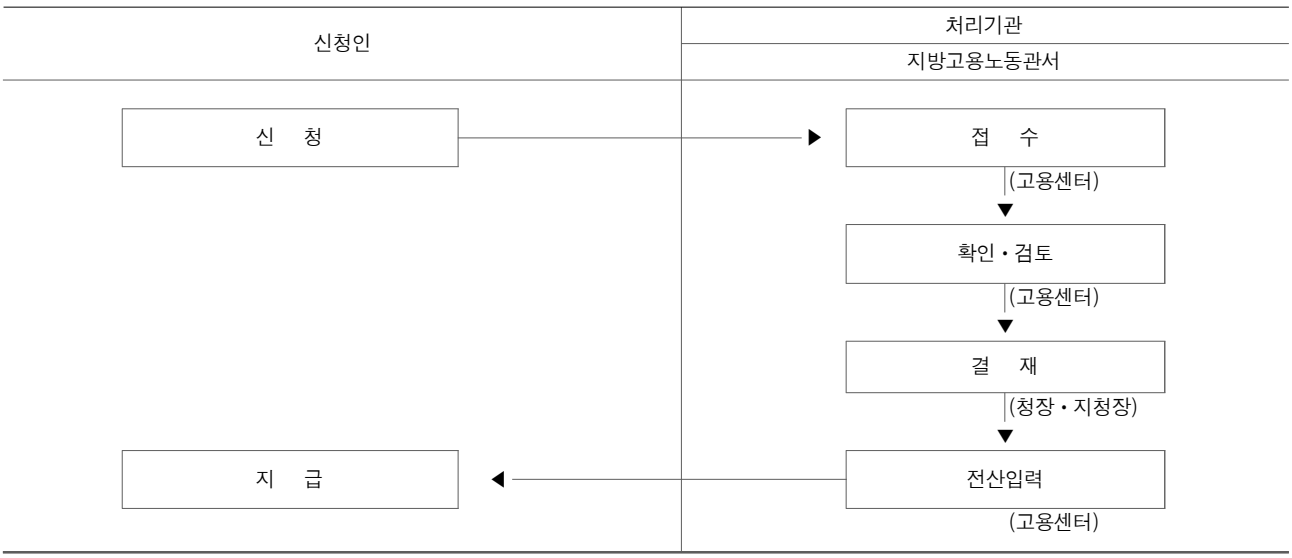
공지사항

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1.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(월)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. 이 경우 일용근로자,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은 제외합니다.
2. ②란은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조치를 한 피보험자수(근로시간 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로 총근로시간이 감소된 피보험자 수)를 적습니다.
3. ③란은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(기준기간) 동안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수의 총 근로시간(①란의 전체 피보험자수 × 조업일수 × 1일 실근로시간)을 적습니다.
4. ④란은 (월) 동안 "①란의 전체 피보험자수 × 조업일수 × 1일 실근로시간"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.(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"0")
5. ⑤란은 ③란 - ④란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.
6. ⑥란은 ⑤란/③란×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.
7. ⑦란은 ⑤란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 총액을 적습니다.
8. ⑧란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/3, 그 외의 기업은 1/2에 표시합니다.
9. ⑨란은 ⑦란 × ⑧란의 산정금액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붙임 4 **고용유지(휴직)조치 지원금 신청서**

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[별지 제34호서식] <개정 2013.12.30>

년 제 차(월분) 고용유지 지원금(휴직)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: 10일
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		
	명칭	대규모기업	[] 해당 [] 비해당
	소재지 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 담당자:)		

신청 내용	① (월)말일 현재 피보험자수	명		
	② (월) 휴직근로자 수	명	③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	원
	④지 원 율	2/3, 1/2	⑤ 지원금신청액	원
	계좌번호	은행 (예금주:)		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1.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.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3.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

연번	성명	주민등록번호	지원금 신청 대상 월의 휴직기간	휴직수당 지급액 ※ 무급휴직일 경우 "무급"이라고 적습니다.
				원
				원
				원
				원
				원
계				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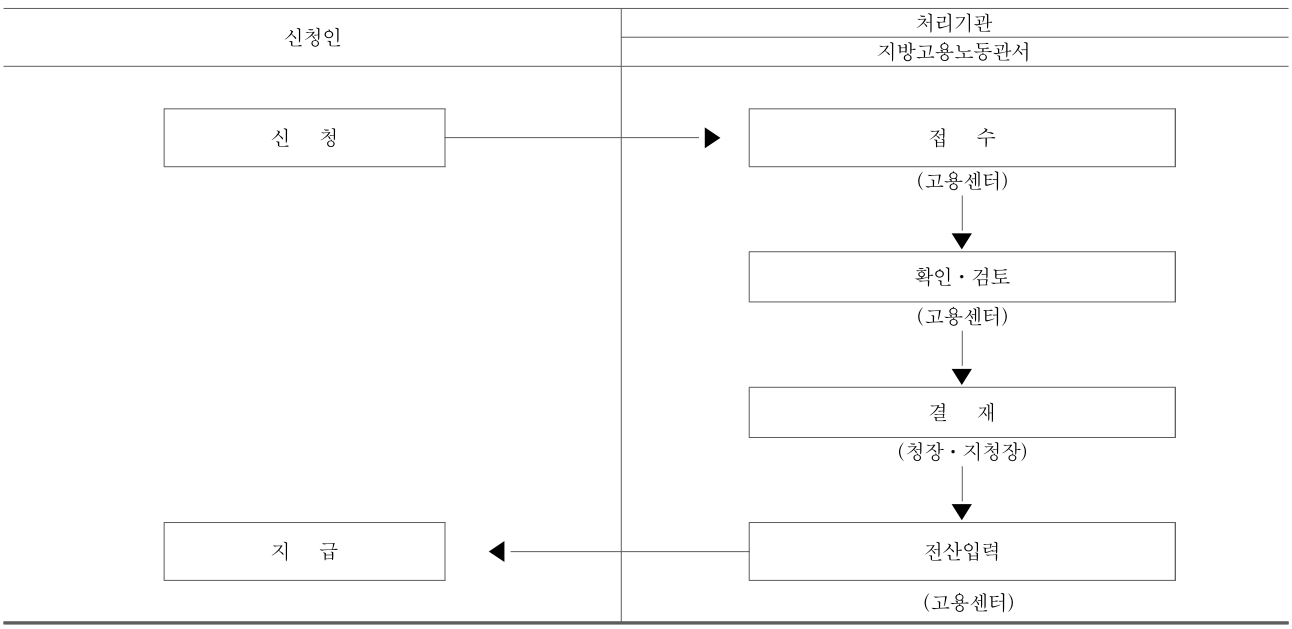
공지사항

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1.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(월)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. 이 경우 일용근로자,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은 제외합니다.
2. ②란은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조치(휴직)를 한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.
3. ③란은 ②란의 고용유지조치(휴직)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 적습니다.
4. ④란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/3, 그 밖의 기업은 1/2에 표시합니다.
5. ⑤란은 ③ × ④의 산정금액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

붙임 5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

전국 고용센터(문의처)

※ 각종서식은 고용보험홈페이지(www.ei.go.kr)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

청	청(지청)	고용센터	주소	담당 지역	대표번호
서울청	서울청	서울고용복지+센터	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, 4층 기업지원과(장교동, 장교빌딩)	서울특별시 중구・종로구・동대문구	02-2004-7394~5, 7910~1
	서울청	서초고용센터	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, 5층	서울특별시 서초구	02-580-4972~5, 4956, 4922, 4978, 4977
	서울강남지청	서울강남고용복지+센터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, 금강타워10층	서울특별시 강남구	02-3468-4703, 4708, 4709, 4711~4716, 4733, 4737, 4787
	서울동부지청	서울동부고용복지+센터	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4층 기업지원팀	서울특별시 성동구・광진구・송파구・강동구	02-2142-8420, 8429, 8433~5, 8443, 8456, 8896, 8404
	서울서부지청	서울서부고용복지+센터	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-8, 5층(도화동, 삼창프라자)	서울특별시 용산구・마포구・서대문구・은평구	02-2077-6001~6, 6025, 6030, 6034, 6065, 6095
	서울남부지청	서울남부고용복지+센터	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, 3층 기업지원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・양천구・강서구	02-2639-2403~2404, 2411, 2413, 2415, 2330, 2333, 2162, 2435, 2499
	서울북부지청	서울북부고용센터	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, 8층	서울특별시 중랑구・노원구・강북구・도봉구・성북구	02-2171-1833, 1800~5
	서울관악지청	서울관악고용복지+센터	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27, 대륭포스트타워 3차 2층	서울특별시 관악구・구로구・금천구・동작구	02-3282-9249, 9353, 9361, 9366, 9379, 9384~6, 9388~9, 9393~4, 9396~7
	중부청	인천고용복지+센터	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과	인천광역시 중구・동구・남구・연수구・남동구 및 옹진군	032-460-4811
	인천북부지청	인천북부고용복지+센터	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	인천광역시 부평구・계양구	032-540-5751 032-540-5742~5

청	청(지청)	고용센터	주소	담당 지역	대표번호
중부청	인천북부지청	인천서부고용복지+센터	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) 10층 기업지원팀	인천광역시 서구. 강화군	032-540-2050 032-540-2051~3
	부천지청	부천고용복지+센터	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부천시	032-320-8972
	부천지청	김포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김포시	031-999-0942
	고양지청	고양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-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고양시・파주시	031-920-3962
	의정부지청	의정부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,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 기업지원팀(가능2동 754)	경기도 의정부시・포천시・구리시・남양주시・동두천시・양주시・연천군・강원도 철원군	031-828-0832~4 0893, 0813, 0838
	경기지청	수원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, 수원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수원시・용인시・화성시	031-231-7897
	성남지청	성남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성남시・광주시・양평군・ 이천시・여주시・하남시	031-739-3170, 3122,4991,4916
	안양지청	안양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, 메쎄포스빌타워 4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안양시・과천시・광명시・의왕시・군포시	031-463-0761~4, 0767,0768
	안산지청	안산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,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안산시・시흥시	031-412-6967
	평택지청	평택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, 장당플라자2층 평택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	경기도 평택시・오산시・안성시	031-646-1238
중부청	강원지청	춘천고용복지+센터	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(석사동), 넥서스프라자빌딩 3층 기업지원팀	강원도 춘천시・화천군・홍천군・양구군・인제군, 경기도 가평군	033-250-1947
	강릉지청	강릉고용복지+센터	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(교동), 강릉고용센터 1층	강원도 강릉시・동해시	033-610-1913
	강릉지청	속초고용복지+센터	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, 3층(조양동) 속초고용센터	강원도 속초시・고성・양양군	033-630-1909
	원주지청	원주고용복지+센터	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,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	강원도 원주시・횡성군	033-769-0943, 0946, 0960

청	청(지청)	고용센터	주소	담당 지역	대표번호
	태백지청	태백고용복지+센터	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	강원도 태백시	033-550-8633
	태백지청	삼척고용복지+센터	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, 현진빌딩4층	강원도 삼척시	033-570-1906
	영월출장소	영월고용복지+센터	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, 영월고용복지+센터(2층)	강원도 영월군・정선군・평창군	033-371-6254
부산청	부산청	부산고용복지+센터	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(양정동) 부산고용복지+센터 3층 기업지원과	부산광역시 중구・동구・서구・ 영도구・남구・부산진구・연제구・사하구	051-860-1923~7, 1931,2072,2100
	부산동부지청	부산동부고용복지+센터	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복지+센터 4층 기업지원팀	부산광역시 동래구・금정구・ 수영구・해운대구・기장군	051-760-7210~5
	부산북부지청	부산북부고용복지+센터	부산 북구 화명대로 9(화명동), 부산북부고용복지+센터 3층 기업지원팀	부산광역시 북구・사상구・강서구	051-330-9951~9955
	창원지청	창원고용복지+센터	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6층 기업지원팀	경상남도 창원시・함안군・의령군·창녕군	055-239-0960
	울산지청	울산고용복지+센터	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+센터 5층 기업지원팀	울산광역시	052-228-1942
	양산지청	김해고용복지+센터	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+센터 4층	경상남도 김해시, 밀양시	055-330-6437
	양산지청	양산고용복지+센터	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양산고용복지+센터 3층	경상남도 양산시	055-379-2430
	진주지청	진주고용복지+센터	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	경상남도 진주시・사천시・산청군, 하동군· 남해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	055-760-6751
	통영지청	통영고용복지+센터	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+센터 3층	경상남도 통영시・거제시 · 고성군	055-650-1811, 1814, 1818
대구청	대구청	대구고용복지+센터	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	대구광역시(중구・수성구・동구)・경산시・영천시・군위군・청도군	053-667-6036
	대구서부지청	대구서부고용복지+센터	대구 서구 서대구로 9(내당동)	대구광역시 남구, 서구・달서구	053-605-6460~7,6479
	대구서부지청	대구달성고용복지+센터	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	대구광역시 달성군, 경상북도 고령군	053-605-9518~9
	대구서부지청	칠곡고용복지+센터	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	경상북도 칠곡군	054-970-1906~7

청	청(지청)	고용센터	주소	담당 지역	대표번호
	포항지청	포항고용복지+센터	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	경상북도 포항시・영덕군・울릉군 및 울진군	054-280-3000
	포항지청	경주고용복지+센터	경주시 원화로 396 7층	경상북도 경주시	054-778-2500
	구미지청	구미고용복지+센터	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	경상북도 구미시・김천시·칠곡군 (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)	054-440-3361
	영주지청	영주고용복지+센터	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	경상북도 영주시・봉화군	054-639-1146
	영주지청	문경고용복지+센터	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	경상북도 문경시・상주시	054-559-8251
	안동지청	안동고용복지+센터	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	경상북도 안동시・예천군・의성군・청송군・영양군	054-851-8062
광주청	광주청	광주고용복지+센터	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	광주광역시 동구.서구.남구.북구, 전라남도 나주시・화순군・ 곡성군・구례군・담양군・장성군	062-609-8500
	광주청	광주광산고용복지+센터	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(2층)	광주광역시 광산구, 전라남도 영광군・함평군	062-960-3201
	전주지청	전주고용복지+센터	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, 전주고용복지+센터 3층 기업지원팀	전라북도 전주시・무주군・장수군・진안군・완주군・임실군	063-270-9210
	전주지청	남원고용복지+센터	남원시 향단로 39, 남원고용복지+센터	전라북도 남원시・순창군	063-630-3917
	전주지청	정읍고용복지+센터	정읍시 수성택지3길 28,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+센터	전라북도 정읍시	063-530-7501
	익산지청	익산고용복지+센터	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	전라북도 익산시	063-840-6507
광주청	익산지청	김제고용복지+센터	김제시 화동길 105	전라북도 김제시	063-540-8406
	군산지청	군산고용복지+센터	군산시 조촌로 62, 군산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	전라북도 군산시	063-450-0636
	군산지청	부안고용복지+센터	부안군 번영로 145, 2층 부안고용복지+센터	전라북도 부안군・고창군	063-580-0515
	여수지청	순천고용복지+센터	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, 4층	전라남도 순천시・보성군・고흥군	061-720-9161

청	청(지청)	고용센터	주소	담당 지역	대표번호
	여수지청	여수고용복지+센터	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, 2층	전라남도 여수시	061-650-0140
	여수지청	광양고용복지+센터	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, 8층	전라남도 광양시	061-798-1902
	목포지청	목포고용복지+센터	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	전라남도 목포시・무안군・신안군・영암군・진도군	061-280-0541~2, 0564
	목포지청	해남고용복지+센터	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, 2층	전라남도 강진군・해남군・완도군・장흥군	061-530-2912
대전청	대전청	대전고용복지+센터	대전시 서구 문정로 56, 4층 기업지원과	대전광역시, 충청남도 금산군	042-480-6012~13, 6015~21
	대전청	공주고용복지+센터	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, 스타타워빌딩 4층	충청남도 공주시	041-851-8507
	대전청	논산고용복지+센터	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-8	충청남도 논산시・계룡시	041-731-8601
	대전청	세종고용복지+센터	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	세종특별자치시	044-861-8992~3
	청주지청	청주고용복지+센터	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, 청주고용복지+센터 1층 기업지원팀	충청북도 청주시・진천군・괴산군・ 보은군・증평군・옥천군・영동군	043-230-6714~6716, 6719, 6721, 7006, 7008
	천안지청	천안고용복지+센터	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, 충남타워 3층	충청남도 천안시・당진시・아산시・예산군	041-620-7441~6
	충주지청	충주고용복지+센터	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(문화동, 충주고용센터) 2층 기업지원팀	충청북도 충주시・음성군	043-850-4030, 4032
	충주지청	제천고용복지+센터	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(화산동, 제천고용센터)	충청북도 제천시・단양군	043-640-9322
	보령지청	보령고용복지+센터	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, 보령고용복지+센터 3층 기업지원팀	충청남도 보령시・서천군・부여군・홍성군・청양군	041-930-6259 6243
	서산출장소	서산고용복지+센터	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, 서산고용복지+센터 5층	충청남도 서산시・태안군	041-661-5614
제주	제주고용센터	제주고용복지+센터	제주시 중앙로 165, 고용복지+센터 2층	제주시・서귀포시	064-710-4462, 4470